

고 소 장

고소인 0 0 0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길 ㅇㅇ (전화: ㅇㅇㅇ - ㅇㅇㅇㅇ)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피고소인 △ △ △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길 ㅇㅇ (전화: ㅇㅇㅇ - ㅇㅇㅇㅇ)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일반건조물방화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로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고소인이 변제를 수차 독촉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〇〇. 〇. 〇. 〇〇시경 고소인의 주소에 소재한 고소인의 헛간에 불을 놓아 이를 전소시킨 사실이 있어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목격자진술서 1통

20○○년 ○월 ○일 위 고소인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 ^^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223조) (※ 아래(1)참조)	소추요건	
제출부수	고소장 1부	관련법규	형법 166조1항
범죄성립 요 건	불을 놓아 164, 165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때		
형 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불기소처분 등에 대 한 불복절차 및 기 간	 ○ 근거 : 검찰청법 10조 ○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 (재정신청) ○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 (헌법소원) ○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